- (가) 꼬임이 끊어진 것
- (나)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
- (9)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(가)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할 것
 - (나)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
 - (다) 해당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
 - (라)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할 것
 - (마) 섬유로프 등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섬유로프 등은 즉시 교체할 것
- (10)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(11) 운전자는 운전중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할 것
 - (나)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어운전을 할 것
 - (다) 차선변경, 좌·우회전시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것
 - (라)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나, DMB 시청을 금지할 것.
 - (마) 경음기, 와이퍼,전조등, 후미등, 차폭등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.
 - (바) 브레이크 및 조향장치의 이상 유·무,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상태 등을 확인 할 것.
 - (사)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할 것
- (12) 운전자는 운행중 도로교통법 및 다음의 운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신호등 및 경찰 공무원(의무경찰 포함)의 수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
- (나) 도로와 현장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
- (다)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